

오픈API 기반의 금융생태계 변화와 시사점

노현주 연구위원, 손재희 연구위원

요약

- 글로벌 주요국에서는 폐쇄적으로 운영하던 고객의 금융데이터를 제3자가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오픈뱅킹(Open Banking) 정책이 추진되고 있음
 - 오픈뱅킹 정책은 추진 국가에 따라 제공 정보의 범위와 참여 기관, 오픈API 의무화 여부 등 도입 방식의 차이는 있으나, 공통적으로 ① 정보주체인 고객의 명시적 동의 아래, ② 제3사업자가 고객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③ 은행 등 금융기관은 표준화된 API 방식으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함
 - 특히, 2018년 1월 시행된 EU의 개정 지급결제서비스지침(PSD2: Payment Services Directive 2)은 전 세계적으로 오픈뱅킹 정책의 도입을 본격화 함
- 우리나라도 오픈뱅킹 정책을 적극 도입하여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금융결제 인프라의 전면 개방과 마이데이터, 마이페이먼트 등과 같은 새로운 금융서비스업 도입을 추진 중임
 - 오픈 API 기반의 결제망인 '오픈뱅킹 공동업무시스템'을 2019년 12월부터 전면 개방하여 전 금융권이 해당 시스템 접속만으로 전체 은행의 결제망 이용이 가능해짐
 - 신용정보법 개정으로 '21년 8월부터 본격화 되는 마이데이터 사업은 고객 동의하 여러 기관에 흩어져 있는 개인신용정보를 수집·통합하여 제공할 수 있고, 전자금융법 개정(안)으로 도입 예정인 마이페이먼트 사업은 은행계좌가 없어도 고객 지시로 결제·송금 등의 필요한 이체서비스를 대행할 수 있음
- 오픈 API 기반의 개방형 금융생태계로의 변화는 비금융사업자가 금융서비스 사업에 진출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제공하여 시장경쟁을 심화시키고, 다양한 금융서비스 개발을 촉진 시킬 것으로 예상됨
 - 은행과 카드업계는 각사의 서비스망에서 고객이탈 방지와 신규고객확보를 위한 다양한 이벤트, UI·UX를 개선 중이며, 대부분 마이데이터 산업에 진입하는 등 종합금융 플랫폼으로의 전환을 모색 중임
- 보험산업도 디지털 전환과 함께 플랫폼 경쟁 본격화에 대비하여 개방형 금융생태계 변화에 보다 면밀한 준비와 적극적 대응이 필요함
 - 선제적인 준비가 없다면 향후 핀테크·빅테크 등 플랫폼 기업의 보험판매·중개서비스 진출이 본격화될 때 보험회사의 플랫폼 종속이 타 업권보다 빠르게 진행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 디지털 시대의 고객기반 확대를 위해서는 데이터 기반의 신속한 고객니즈 인지와 상품·서비스의 적시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고객 접점 확대와 데이터 역량 강화를 위해 마이데이터 사업 등 새로운 금융서비스 사업진출에 대한 적극검토가 요구됨



1. 서론

- 글로벌 주요국에서는 폐쇄적으로 운영하던 고객의 금융데이터를 제3자가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오픈뱅킹(Open Banking) 정책이 추진되고 있음
 - 오픈뱅킹 정책이란 ① 정보주체인 고객의 명시적 동의 아래, ② 제3사업자가 고객의 금융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③ 은행 등 금융정보 보유기관은 표준화된 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 방식으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것임
 - API란 서로 다른 프로그램의 기능이나 데이터를 상호 이용할 수 있도록 미리 정한 통신규칙(명령어 집합)이며, 접속권한에 따라 해당 조직(회사 혹은 기관) 내부에서만 프로그램 접근이 가능한 것은 폐쇄형(Closed) API, 외부 제3자도 접근 할 수 있도록 표준화하여 공개한 것을 개방형(오픈, Open)API라 함
 - 추진 국가에 따라 제공 정보의 범위, 참여 기관, 오픈API 의무화 여부 등 도입 방식의 차이는 있으나, 공통적으로 핀테크 기업 등 제3자가 고객의 계좌정보에 접근하는 것이 허용되고 고객에게 새로운 서비스가 제공되는 등 기존 금융기관 중심의 폐쇄적인 정보활용구조를 벗어나 금융시장의 혁신과 경쟁 촉진을 목표로 하고 있음
- 특히 2018년 1월 시행된 EU의 개정 지급결제서비스지침(PSD2: Payment Services Directive 2)은 전 세계 오픈뱅킹 정책 도입을 본격화시켰음
 - PSD2는 유럽은행감독청(EBA: European Banking Authority)이 2007년에 제정한 유럽 내 지급결제서비스와 관련 업체에 관한 규제인 PSD를 온라인 결제 환경 변화 등을 반영하여 개정한 것임
 - 개정된 지침은 새로운 유형의 제3자 지급결제서비스 제공업자(TPP: Third Party Payment service provider)를 도입하였으며 TPP는 고객동의하에, 고객계좌가 없어도 계좌정보를 이용하여 2가지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짐
 - 고객의 흩어져있는 금융정보를 취합하여, 온라인상으로 통합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며 이러한 서비스 제공자를 계좌정보서비스 제공업자(AISP: Account Information Service Provider)라고 함
 - 온라인상 지급인의 지급개시 요청에 따라 (은행)계좌개설기관으로부터 필요 정보를 송·수신하고, 수취인에게 지급지시를 대행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며 이러한 서비스 제공자를 지급지시서비스 제공업자(PISP: Payment Initiation Service Provider)라고 함
- 최근 우리나라 금융당국도 오픈뱅킹 정책을 적극도입하여 관련 제도정비와 결제인프라를 개방하고, EU PSD2의 AISP, PISP와 유사한 새로운 금융서비스업의 도입을 추진하고 있으며 본고에서는 이러한 국내 오픈뱅킹 추진 현황을 살펴보고 국내 보험업계에 주는 시사점을 검토하고자 함



2. 국내 오픈뱅킹 정책 추진 현황

○ 국내 오픈뱅킹 정책은 인프라 및 법 정비, 새로운 서비스업 신설 등 크게 3가지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음

- (결제인프라 개방) 오픈 API 기반의 결제망인 '오픈뱅킹 공동업무시스템'을 2019년 12월부터 전면개방하여 핀테크 등 이용기관은 해당 시스템 접속만으로 전체 은행의 결제망 이용이 가능해짐
- (서비스업 신설) '본인신용정보관리업(마이데이터 산업)'과 '지급지시서비스업(마이페이먼트 산업)' 등 새로운 금융서비스업 신설을 추진함
- (관련 법 정비) 한편, 이의 법적근거 및 개인정보보호 강화 등을 위해 데이터3법(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법, 정보통신망법)과 전자금융거래법을 개정함¹⁾

○ 오픈뱅킹 공동업무시스템(오픈뱅킹시스템)은 은행을 비롯한 다양한 금융기관이 공통으로 사용하는 오픈 API 기반의 결제인프라로 이를 통해 고객은 하나의 앱에서 여러 금융기관의 계좌를 조회하고 이체가 가능함

- 핀테크 산업 육성을 위해 이미 운영 중이던 금융권 공동 오픈플랫폼('16. 8)²⁾을 전면개방한 것으로 기존의 제약사항으로 지적되던 API 이용수수료를 인하하고 이용할 수 있는 기관을 전 금융권으로 확대함
 - 중소형 핀테크 사업자로 한정된 이용기관을 개방하여 모든 핀테크 사업자와 은행('19. 12)→증권사·상호금융사('20. 12)→저축은행('21. 4)→카드사('21. 상반기)³⁾로 확대하였으며, 현재 보험업만 참여하지 않은 상태임
- 입금·출금 이체, 잔액, 거래내역, 계좌실명, 송금인정보, 수취 조회 등 7개 표준 API가 제공되며, API 이용 수수료로 이전(오픈 플랫폼) 대비 최대 1/10 수준으로 인하함

〈표 1〉 오픈뱅킹 API 이용 수수료 체계 변경

수수료	출금이체	입금이체	잔액조회	거래내역 조회	계좌실명 조회	송금인정보 조회	수취조회
변경 전	500원	400원	10원	50원	100원	300원	-
변경 후 (경감)	50원 (30원)	40원 (20원)	10원 (5원)	30원 (20원)	50원 (30원)	50원 (30원)	10원 (5원)
'21년 1월 추가 인하	-	-	3원 (2원)	10원 (5원)	15원 (8원)	15원 (8원)	3원 (2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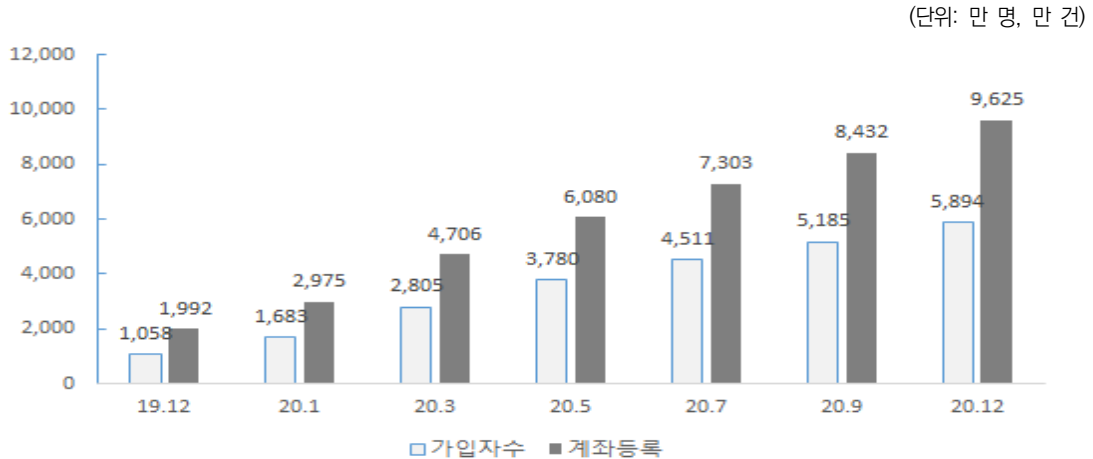
주: 중소형사(월 이체금액 100억 원 ↓, 조회거래 건수 10만 건 ↓) 경우 경감 비용을 적용함

자료: 금융위원회(2019) 및 언론보도를 참고함

- 1) 데이터3법은 2018년 5월부터 시행하였고 전자금융거래법은 현재 국회 심의 중임. 개정된 신용정보법 통해 마이데이터 산업이 도입되고,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에 마이페이먼트 산업 및 종합지급결제업 도입을 명시함
- 2) 2016년 8월부터 '공동 오픈플랫폼'을 구축(은행권은 금융결제원, 금융투자업권은 코스콤), 중소형 핀테크 기업이 개별 은행과 제휴 없이 조회 및 이체 기능을 활용할 수 있도록 표준API와 테스트베드(서비스 오픈 전 테스트 공간)를 제공하였으나, 높은 수수료 수준 등이 한계임
- 3) 오픈뱅킹 참가기관은 일정 수준의 데이터 개방을 의무화 함. 계좌보유기관이 아닌 카드업계는 청구금액 등 정보공유 내역을 별도협의함

- 국내 오픈뱅킹시스템은 초기부터 ① 조회뿐만 아니라 입·출금 가능한 API를 제공, ② 모든 은행이 정보제공 기관이자 이용기관으로 참여, ③ 공동플랫폼을 통한 이용 및 제공 기관의 중계 등으로 이용규모가 지속증가 중임

〈그림 1〉 국내 오픈뱅킹 시스템 가입자 및 등록계좌 수 추이(누적)



자료: 금융위원회(2020)

- 본인신용정보관리업(신용정보법상), 즉 금융분야의 마이데이터(MyData)⁴⁾사업은 고객동의하에 여러 기관에 흩어져 있는 개인신용정보의 통합·조회 서비스 제공을 고유업무로 하는 사업임
 - 마이데이터 사업자는 금융당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하며, 본인신용정보 통합조회서비스 외 부수·겸영 업무로 데이터 분석 및 컨설팅, 신용정보 관리,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대리행사, 투자자문·일임업 등이 가능함
 - 마이데이터 사업자는 최소자본금 5억 원 이상, 시스템 구성·보안체계 적정성, 사업계획 타당성, 대주주·임원 적격성, 데이터 처리경험 등 전문성 요건 등을 충족해야 함
 - 개인신용정보 보유기관(은행, 카드, 보험, 증권, 통신, 전자금융, 공공기관 등)은 고객의 '본인신용정보 전송요구권' 행사에 따라 마이데이터 사업자에게 고객데이터를 제공해야 함
 - 본인신용정보 전송요구권은 고객(소비자)이 고객의 신용정보를 다른 금융사나 기관에게 전송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 정보보유기관은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음
 - 특정기준에 미달하는 규모가 작은 제공기업은 중계기관(신용정보원, 금융결제원, 코스콤 등)을 통할 수 있음
 - 금융당국은 '21년 1월 기존 유사서비스⁵⁾ 제공 사업자 중 28개사를 1차 사업자로 허가했으며, '21년 4월 2차 사업자 선정을 위한 절차를 시작하였음
 - 사업이 개시되면 API를 통해 고객정보가 전송되며, 기존 이용하던 스크린 스크래핑 기술로는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게 됨

4) 마이데이터는 '정보주체인 개인의 정보 활용 권한을 보장, 본인 데이터에 대한 열람, 제공 범위, 접근 승인 등을 직접 결정함으로써 데이터 주권을 확립'하고자 하는 개념으로 의료, 교육, 공공 등 타 산업분야에도 적용됨

5) 개인동의를 받고 수집하여 고객에게 통합조회서비스를 하는 경우를 말함. 내부 신용평가에만 이용하는 경우는 아님. 보험업권은 1차 대상자에 미포함됨

〈표 2〉 고객이 전송 요구 할 수 있는 개인신용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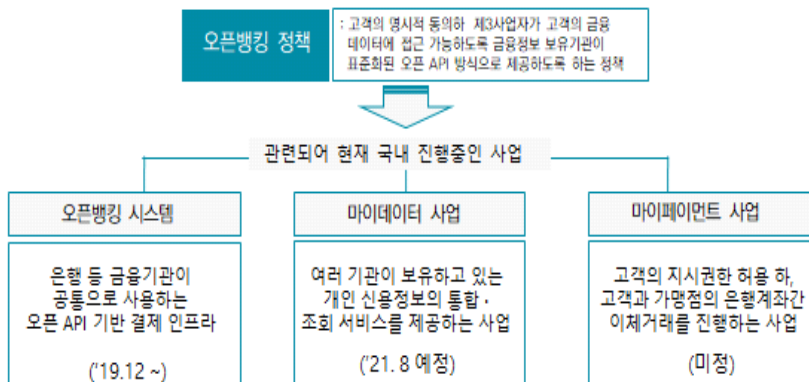
구분	적용 업권	대상 정보
여·수신	은행, 외은지점, 할부금융, 종합금융, 저축은행, 상호금융, 대부, 새마을금고	예·적금(납입액, 금리, 만기 등), 대출(잔액, 금리, 만기 등), 투자상품(예수금, 매입종목, 거래단가·수량, 평가금액 등) 등
보험	생명보험업, 손해보험업	가입상품(계약, 특약, 납입내역, 자기부담금 등), 대출(잔액, 상환내역 등) 등
카드	신용카드업, 경영여신업	월 이용정보(금액, 일시, 결제예정총액), 카드대출, 포인트 등
금융투자	금융투자업	투자상품(예수금, 매입종목, 거래단가·수량, 평가금액 등), 연금(납부액, 만기수량액 등) 등
전자금융업	전자금융업	선불발행정보(잔액, 충전계좌), 거래내역(일시, 금액), 주문내역정보(12개 범주화) * 가전·전자, 도서·문구, 패션·의류, 스포츠, 화장품, 아동·유아, 식품, 생활·가구, 여행·교통, 문화·레저, 음식, e쿠폰·기타
기타	통신, 공공 등 기타	통신 청구·납부·결제정보, 국세 및 지방세 납부정보, 고용보험 등 4대 보험 납부확인 등

자료: 금융위원회·한국신용정보원(2021. 2) 자료를 재정리함

○ 마이페이먼트(MyPayment) 사업은 고객이 마이페이먼트 사업자에게 자신의 은행계좌에 대한 지급지시 권한을 허용해 주면, 사업자가 고객과 가맹점의 은행계좌 간 이체거래를 진행하는 사업임

- 마이페이먼트 사업은 결제자금을 보유하거나 사전 충전을 하지 않아도 고객의 계좌정보만으로 결제·송금 등에 필요한 이체지시를 할 수 있음
- 따라서 현재의 신용카드 중심의 지급결제 네트워크가 은행계좌-마이페이먼트 사업자-소비자로 재편되고 카드발급 및 전표매입 과정이 생략 될 수 있어, 수수료 인하와 고객접점 이동이 가능함
- 특히 막대한 고객 기반을 보유한 비금융 간편결제 서비스업체가 마이페이먼트 사업자로 인가되면, 낮은 수수료의 직불결제 서비스를 확산시킬 가능성이 높아 기존 체크카드 시장의 위축과 신용카드 규모 축소가 예상됨⁶⁾

〈그림 2〉 오픈 API 기반 오픈뱅킹 정책과 국내 적용 사업





3. 시사점

- 오픈 API 기반 개방형 금융생태계는 비금융사업자가 금융서비스 사업에 진출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제공하여 시장경쟁을 심화시키고 다양한 금융서비스 개발을 촉진시킬 것으로 예상됨
 - 오픈뱅킹서비스 본격화로 하나의 은행 앱에서 다른 은행계좌까지 모두 관리할 수 있게 된 은행권은 각사의 서비스 망에서 고객이탈을 방지하고 신규고객 확보 등을 위해 경품이벤트, 수수료 인하, UI·UX⁷⁾ 개선 중임
 - 네이버, 카카오 등 '페이'의 결제시장 진입과 가맹점 수수료 인하 등으로 새로운 수익원이 절실한 카드업계는 대부분의 회사가 마이데이터 산업에 진입하고, 지급결제구조 변화에 대비하여 오픈뱅킹 플랫폼에 적극참여하는 등 종합 금융 플랫폼으로의 전환을 모색 중임
 - 개방형 금융생태계는 핀테크 사업자가 금융기관과의 개별계약 없이 간편하고 낮은 비용으로 지급서비스 기능(페이 충전, 송금 등)을 신속하게 구현할 수 있어 수익구조 개선⁸⁾이 용이해 질 수 있으며, 마이데이터·마이페이먼트 사업에 진출 시 금융정보 조회·지급·결제·자산관리 등 종합적인 금융서비스 제공도 가능해짐
- 보험산업은 디지털 전환과 함께 플랫폼 경쟁 본격화에 대비하여 개방형 금융생태계 변화에 보다 면밀한 준비와 적극적 대응이 필요함
 - 개방형 생태계 전환은 디지털경제 특성상 '포털 네이버', '메신저 카카오톡'처럼 금융서비스도 하나의 플랫폼으로 수렴할 가능성을 높일 것이므로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함
 - 선제적인 준비가 없다면 향후 핀테크·빅테크 등 플랫폼 기업의 보험판매·중개서비스 진출이 본격화될 때 보험회사의 플랫폼 종속이 타 업권보다 빠르게 진행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 플랫폼 경쟁에서 성공을 위해서는 다수 고객을 확보하고 더불어 고객의 이용 편의성 제고를 통해 고객의 앱 혹은 웹 체류 시간을 연장하는 것이 중요함
 - 타 금융권 대비 고객 노출기회가 적은 보험업권은 외부 기업과 적극적 제휴로 고객 접점 확보를 하고, 모바일 앱 메뉴 및 프로세스를 단순화하고 직관적인 디자인을 적용하는 등 UX 경쟁력 확보가 필요함
 - 디지털 시대의 신규고객 확보 및 고객 유지 등 고객기반 확대를 위해서는 데이터를 통한 신속한 고객니즈 인지와 맞춤형 상품·서비스의 적시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마이데이터 사업은 이러한 역량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임
 - '마이데이터' 사업은 고객동의하 광범위한 정보 수집 및 통합 분석으로 개인화 서비스 역량을 높일 수 있고, 향후 비금융권 마이데이터와 연계하여 헬스케어 등 비즈니스 영역을 확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
 - 한편, 전 금융권으로 확대된 '오픈뱅킹' 시스템에 대해 보험업계의 참여가능성도 살펴 볼 필요 있음
 - 하나의 앱으로 전 금융기관과 연결되고, 이용가능 계좌도 지속 확대되므로 고객 편의성 제고와 뱅킹 수수료 절감이 가능하며, 고객 접점도 확대할 수 있음

6) 여신금융연구소(2020), 「간편결제 서비스의 등장과 카드업 영향분석」

7) UX는 사용자 경험(User Experience)을 의미함

8) 한국금융연구원(2020. 9)은 핀테크 기업들이 오픈뱅킹플랫폼 이용으로 약 731.9억 원의 댄싱비용 절감한 것으로 추정함(평균 건당 300원→ 50원)